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523호 2019. 11. 25.(월요일)

조 례

- 하동군 조례 제2382호 하동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2
- 하동군 조례 제2383호 하동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6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19-201호 농업생산기반정비(개간)시행인가(변경) 및 고시..... 20
- 하동군 고시 제2019-202호 소하천 점용허가 고시(박원* 외1)..... 22
- 하동군 고시 제2019-203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24
- 하동군 고시 제2019-205호 공유수면 점용 허가 고시(김길*)..... 26
- 하동군 고시 제2019-208호 공유수면 점용 허가 고시(김정*)..... 28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19-1205호 민방위 2차 보충교육 공시송달 공고..... 30

회
람

발행 : 하동군 편집 : 기획예산과 (055)880-2041, 행정2041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1월 25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382 호

하동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 받은 기관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요양기관 등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

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복지 및 교육 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요양보호사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신분보장)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 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기관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제8조(처우개선 사업) ① 군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요양보호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요양보호사 근무환경의 질적 향상과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상담 등의 지원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
2. 요양보호사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해소하기 위한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요양보호사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요양보호사 취업·창업 상담 지원 및 대체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다른 조례등과의 관계) ①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요양보호사의 처우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1월 25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383 호

하동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향토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문화유산”이란 하동군 내에 있는 문화재로서 「문화재보호법」,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국가·도 지정문화재 등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역사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유·무형의 유산 또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향토문화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동군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3. 향토문화유산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4. 향토문화유산의 국가·도지정문화재로의 지정 신청 사항
5. 그 밖에 향토문화유산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와 문화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문화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유·무형문화재를 소유하거나 보유한 사람
3. 문화·예술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재 담당이 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그 심의에 관계되는 사람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수당 등)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이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 할 때에는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향토문화유산의 지정) ① 군수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유산을 하동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향토문화유산은 향토유형문화유산, 향토무형문화유산, 향토기념물, 향

토민속자료 등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③ 향토문화유산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할 때에는 그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소유자, 주소지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지정의 해제)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향토문화유산이 국가·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2. 지정 향토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잃은 경우
3. 향토문화유산으로서 원형이 변형되거나 손실된 경우
4.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소유자 등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고 교부된 지정서를 반환 받아야 한다.

제12조(지정의 고시) ① 군수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을 지정 및 해제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변경할 경우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고시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는 이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토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자 지정)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에 대하여 그 소유자 또는 토

지소유자를 향토문화유산관리자(이하“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②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그 소유자 등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향토문화유산에 대하여 소재지 읍·면장 또는 향토문화유산의 보호에 관심이 있는 자를 별도의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리자를 지정할 경우 미리 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하동군 향토문화유산 관리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존·관리) 향토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리자는 향토문화유산의 원형이 변형되지 않도록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사항 등을 기재한 안내판 또는 경고판 등의 안내 표지를 향토문화유산 주변에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향토문화유산 보존 문제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점검·기록)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을 연 1회 점검하여 보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관리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경비보조 등) ① 향토문화유산의 보존에 필요한 경비는 그 해당되는 소유자 등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

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및 지도·감독 등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면)

제 호

하동군 향토문화유산 지정서

명 칭

수 량

소재지

위를 하동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하 동 군 수 (인)

(뒷면)

소 유 자	주 소	소재지 또는 보 관 장 소	교 부 또 는 재교부연월일	기 록 인

변 경 사 항

소 유 자	주 소	소재지 또는 보 관 장 소	변경연월일	기 록 인

※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별지 제4호서식]

하동군 향토문화유산 관리자 지정서

관리자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성 별)	

위 관리자를 「하동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동군 향토문화유산 관리자로 지정합니다.

- 다 음 -

1. 하동군 향토문화유산 명칭 및 수량
2. 관리기간
3. 관리내용
4. 관리조건

년 월 일

하 동 군 수

[별지 제5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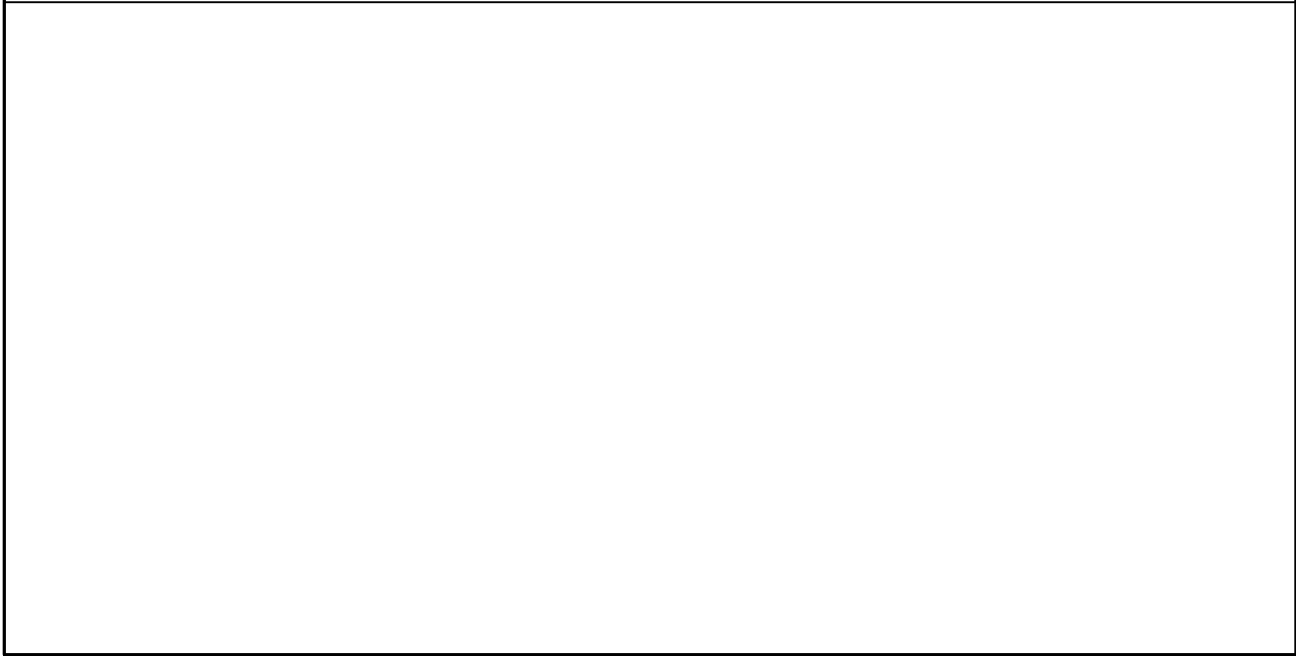
하동군 향토문화유산 관리 대장

관리번호			
명 칭	한 글	한 자	
	영 문		
분 야		재 료	
구 조			
규격/크기			
수량/면적		연대/시대	
소재지/ 보관장소			
소 유 자	주 소		
	성 명(성별)	전화번호	
관리단체(자)	주 소		
	성 명(성별)	전화번호	
내 용 (연혁, 유래, 전설)			
관리상황 (지정경위 · 현상변경 · 보수정비 · 변동사항 등)	일 자	내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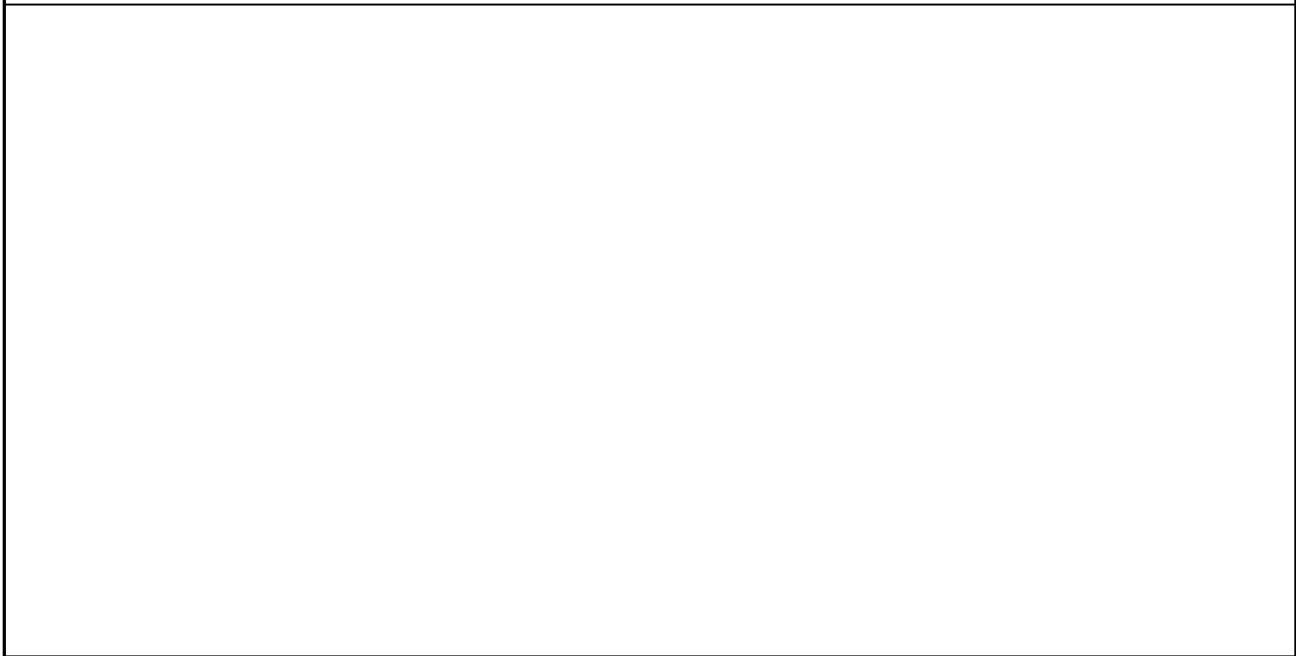
향토문화유산명 :		사 진	
명 칭		명 칭	

명 칭		명 칭	
명 칭		명 칭	

() 실 측 도



() 위 치 도



하동군 고시 제2019 - 201호

개 간 사 업 시 행 계 획 (변경) 승 인 서

사 업 시 행 자	성 명	양일*	생년월일	
	주 소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공항길 286		
개 간 장 소	시·군	읍·면	리·동	
	하동	북천	방화	
개 간 의 용 도	전작재배			
승 인 면 적	지 번	지 목	지 적	※ 토지 대가
	산102-8	임	1,040㎡	
	381		807㎡	
지 정 착 수 시 기	2019. 7. ~ 2019. 12. 31			
공 사 비 예 정 액	23,000천원			
승 인 조 건	시행인가조건 18항을 부함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개간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함.

2019년 11월 8일

하 동 군 수

비 고 : ※는 소유자 개발 시에는 기재 불요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토지표시

토지의 소재				지목	지적	개간승인면적	토 지 대 가				비고
시·군	읍·면	리·동	지번				m ² 당	금액	주 소	성명	
하동	북천	방화	산102-8 381	임야 임야	1,403m ² 807m ²	1,040m ² 807m ²			옥중면 공향길 286	양일*	

1. 개간사업 시행승인서에는 계획평면도를 첨부함.
2. 승인을 받은자가 「농어촌정비법」 제116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당하였거나 기타사유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즉시 승인서를 반납할 것.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변경) 공고

하동군 고시 제2019-202호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하 동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대표자 (성명)	박원*, 이성*	주소	하동군 하동읍 매화골막점길 89
소하천명		홍룡천		
공사(점용·사용) 개요	위치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홍룡리 1741(구) (*인접:홍룡리 461(잡))		
	면적	388.03㎡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기간	2019. 11. 12. ~ 2024. 11. 12. ※기타사항 점용 허가조건 참조		
	목적 및 사유	토지의 점용(진출입로 확보)		

열람서류(하동군 안전총괄과에서 열람 가능)

1. 실시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만 해당)
2. 위치도

허 가 조 건

1. 점용료는 매년1회 납입고지서에 의거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정당한 절차 없이 양도·양수, 승계, 전매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3. 정당한 절차 없이 점용목적 및 면적이외 사용을 금지합니다.
4. 정당한 절차 없이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축제, 식수, 기타 유수에 저해되는 시설 및 자연경관 및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5. 유독물 또는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행위와 하천부속물을 손괴하거나 손괴 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일체 금지합니다.
6. 공익상 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점용장소를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으며 피허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7. 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점용하고자 할 때에는 점용기간 만료30일전까지 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8.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가. 급성독성의 정도가 맹독성 또는 고독성인 농약과 어독성의 정도가 1급인 농약(농약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 나. 중금속의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비료(비료관리법시행령 별표 1)
 - 다. 퇴비의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비료
9. 하천,공유수면 및 하천부속물을 손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10.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단, 하천부속물등 하천의 유지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함.)
11. 하천으로의 통행을 어렵게 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12. 국가 및 공익상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점용면적을 가감 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13. 소음, 공해 기타행위로 인하여 인근 주민(제3자 등)에게 입힌 피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합니다.
14. 현행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5. 점용을 중지하거나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16. 점용허가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점용물처리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17. 원상회복면제의 신청 없이 방치되는 점용물에 대하여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18. 점용물의 임대 또는 관리위탁 하여서는 안됩니다.
19. 이용객에게 사용료를 부과하여서는 안됩니다.
20. 각 항의 위반행위를 할 때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동군 고시 제2019 - 203호

도로명주소 부여 ·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하거나 폐지된 도로명 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1. 14.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황천면 경서대로 1175-17 외 10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11건)				

○ 도로명주소 폐지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모암길 30-5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	폐지사유
별 지 참 조(1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11. 14.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이동유 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횡천리 산12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경서대로 1175-17	2019 1114		2009 0710	경남의 서부지역을 잇는 도로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584-2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금성로 267	2019 1114		2007 0619	금성면을 통과하는 주요 간선도로로 면이름에서 부여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산50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정안로 346	2019 1114		2007 0618	도로구간 인근에 위치한 정안봉이라는 산이름에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499, 산238-7, 500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정안로 309-14	2019 1114		2007 0618	도로구간 인근에 위치한 정안봉이라는 산이름에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산46-10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정안로 346-3	2019 1114		2007 0618	도로구간 인근에 위치한 정안봉이라는 산이름에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여의리 349-2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구여의길 15	2019 1114		2007 0618	여의 옛날 이름을 도로명에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홍룡리 473-3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매화골떡점길 118-6	2019 1114		2007 0618	매실이 많이 나는 마을특성에 떡점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북방리 228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북방우회길 39-8	2019 1114		2008 0402	넓고 비옥한 평야를 상징한다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명에 지역특성을 합성하여 북방우회길로 명명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1178-1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서재길 81-25	2019 1114		2009 0302	서당이 있었다 하여 붙여진 서재골 지역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안계리 661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안계길 97-21	2019 1114		2008 0402	마을앞 뽕피가 닭이 알을 품고 있는 격이라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청룡리 388-5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청룡상촌길 10-13	2019 1114		2008 0402	청룡과 상촌을 합성하여 청룡상촌길로 명명	

[별지 제5호서식]

허가번호 제2019-20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증

허가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성별)
	김 길 *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주 소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들포길	

장소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통리 866번지 (*인접:진교면 고통리 779-3)

면적(또는

채취량·투기량)

0.75m²

(또는

m³)

목적

단독주택 정화도 배관 매설(150mm PVC관 매설)

기간

2019. 11. 18. ~ 2024. 11. 18. (5년)

점용·사용의 유형

토지의 점용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해당없음

허가조건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개별법에 의거 허가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허가면적·목적의 사용을 금하며, 면적의 추가나 계획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공공사업 등 허가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점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허가자가 복구요청시에는 이의없이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5. 점용으로 인한 유수의 지장 발생시 즉시 자진하여 철거 및 보완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하 동 군 수 (인)

허 가 조 건

1. 점용료는 매년1회 납입고지서에 의거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정당한 절차 없이 양도·양수, 승계, 전매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3. 정당한 절차 없이 점용목적 및 면적이외 사용을 금지합니다.
4. 정당한 절차 없이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축제, 식수, 기타 유수에 저해되는 시설 및 자연경관 및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5. 유독물 또는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행위와 하천부속물을 손괴하거나 손괴 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일체 금지합니다.
6. 공익상 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점용장소를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으며 피허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7. 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점용하고자 할 때에는 점용기간 만료30일전까지 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8.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가. 급성독성의 정도가 맹독성 또는 고독성인 농약과 어독성의 정도가 1급인 농약(농약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 나. 중금속의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비료(비료관리법시행령 별표 1)
 - 다. 퇴비의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비료
9. 하천,공유수면 및 하천부속물을 손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10.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단, 하천부속물등 하천의 유지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함.)
11. 하천으로의 통행을 어렵게 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12. 국가 및 공익상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점용면적을 가감 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13. 소음, 공해 기타행위로 인하여 인근 주민(제3자 등)에게 입힌 피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합니다.
14. 현행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5. 점용을 중지하거나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16. 점용허가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점용물처리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17. 원상회복면제의 신청 없이 방치되는 점용물에 대하여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18. 점용물의 임대 또는 관리위탁 하여서는 안됩니다.
19. 이용객에게 사용료를 부과하여서는 안됩니다.
20. 각 항의 위반행위를 할 때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별지 제5호서식]

허가번호 제2019-208호

공유수면 점용 · 사용허가증

허가 대상자	성 명 김 정 *	생년월일(성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주 소 대구광역시 북구 내곡로 89	

장소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화정리 1613(구) (*인접: 화정리 산288)

면적(또는

채취량 · 투기량)

2 m²

(또는

m³)

목적

주택 진·출입로 확보

기간

2019. 11. 20. ~ 2024. 11. 20.

점용 · 사용의 유형

토지의 점용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해당없음

허가조건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개별법에 의거 허가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허가면적 · 목적의 사용을 금하며, 면적의 추가나 계획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공공사업 등 허가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점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허가자가 복구요청시에는 이의없이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5. 점용으로 인한 유수의 지장 발생시 즉시 자진하여 철거 및 보완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 · 사용을 허가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하 동 군 수 (인)

허 가 조 건

1. 점용료는 매년1회 납입고지서에 의거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정당한 절차 없이 양도·양수, 승계, 전매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3. 정당한 절차 없이 점용목적 및 면적이외 사용을 금지합니다.
4. 정당한 절차 없이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축제, 식수, 기타 유수에 저해되는 시설 및 자연경관 및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5. 유독물 또는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행위와 하천부속물을 손괴하거나 손괴 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일체 금지합니다.
6. 공익상 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점용장소를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으며 피허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7. 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점용하고자 할 때에는 점용기간 만료30일전까지 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8.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가. 급성독성의 정도가 맹독성 또는 고독성인 농약과 어독성의 정도가 1급인 농약(농약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 나. 중금속의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비료(비료관리법시행령 별표 1)
 - 다. 퇴비의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비료
9. 하천,공유수면 및 하천부속물을 손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10.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단, 하천부속물등 하천의 유지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함.)
11. 하천으로의 통행을 어렵게 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12. 국가 및 공익상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점용면적을 가감 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13. 소음, 공해 기타행위로 인하여 인근 주민(제3자 등)에게 입힌 피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합니다.
14. 현행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5. 점용을 중지하거나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16. 점용허가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점용물처리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17. 원상회복면제의 신청 없이 방치되는 점용물에 대하여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18. 점용물의 임대 또는 관리위탁 하여서는 안됩니다.
19. 이용객에게 사용료를 부과하여서는 안됩니다.
20. 각 항의 위반행위를 할 때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동군 공고 제2019-1205호

민방위 2차 보충교육(훈련)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민방위 2차 보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일시

- 1) 민방위 집합교육 : 2019. 11. 25. (월) 09:00~13:00
- 2) 민방위 비상소집 : 2019. 11. 25. (월) 19:00~20:00

나. 교육장소

- 1) 민방위 집합교육 : 하동군종합사회복지관(다목적홀)
- 2) 민방위 비상소집 : 하동군청 대회의실

다. 교육내용 : 민방위 임무 숙지를 위한 이론교육 및 실전체험훈련 등

라. 준비사항 : 신분증, 필기구 지참

마. 공고대상 : 불임참조

3.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2019. 11. 20.

하 동 군 수

